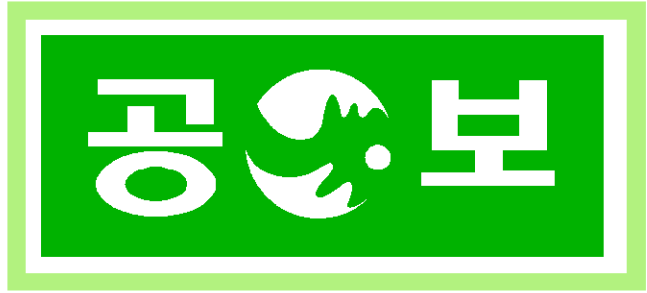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기 관 의 장



제 782 호 2012. 11. 9(금)

조 례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685호[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686호[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7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687호[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6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688호[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21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689호[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 26

회 관									
--------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기획홍보실(☎241-7124 행정712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윤종오



2012년 11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685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 19조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비나 시비 보조금 및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 2. 향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 3.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 ② 기금은 제1항의 용도 외의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관리)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한다.

제7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된 기금운용 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 지난 때에 폐쇄한다.

제9조(기금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문화예술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문화예술 업무담당주사

-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의 지원 여부 및 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4. 문화예술 진흥 및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 담당과장
2. 구의회 의원 1명
3. "울산광역시 북구문화원" 사무국장
4. 문화예술 진흥사업이나 활동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

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 ④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 담당자가 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기금운용 계획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지역의 열악한 문화예술진흥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조성 재원(제3조)
- 나. 기금의 용도(제4조)
- 다. 기금의 존속기한 : 2017년 12월 31일까지(제5조)
- 라. 기금 운용계획(제7조)
- 마. 위원회의 기능(제11조)
- 바.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제12조)
- 사. 위원회 회의(제14조)
- 아. 위원회 간사 및 서기(제15조)
- 자. 회계공무원(제16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윤종오



2012년 11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686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9호까지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체육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문화체육과장”을 “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생활체육협의회장”을 “생활체육회장”으로, “자”를 “사람”으로, 제3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시설물별로 별표 3과 같으며, 오토벨리 복지센터·국민체육센터의 강좌에 대하여 2강좌 신청 시 사용료는 2강좌 중 사용료가 낮은 강좌의 사용료에 100분의 50을 할인 적용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12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녹색생활 확산을 위하여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사용료 감면: 시설물별로 따로 정함.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중산다목적구장”란 다음에 “가람다목적구장, 효문다목적구장”란을 각각 신설한다.

별표 3의 3. 체육시설 사용료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설치(제3조 관련)

시설명(명칭)	소재지	주요시설	비고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신천동 580번지 일원 (호계로 416-31)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체력측정실, 스쿼시장 등	
농소운동장	창평동 391-1번지 외 1 (호계로 180-14)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화장실, 관리실 등	
효문운동장	연암동 322-7번지 일원	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체력단련시설, 인공암벽 등	
양정생활체육공원	양정동 503-1번지 일원 (오치골 2길 25)	주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다목적운동장, 체력단련시설 등	
화봉 다목적구장	화봉동 445-1번지 일원 (송내 1길 15)	다목적구장(인조 1식)	
상안 풋살구장	상안동 352번지 일원	다목적구장(인조 1식)	
오도밸리 복지센터	연암동 1121-2번지 일원 (산업로 1020)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예식장, 뷔페 등	
무룡운동장	무룡동 276-1번지 일원 (달곡 2길 38)	축구장, 관리실, 체력단련장	
달천운동장	달천동 75-1번지 일원 (농서로 301)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다목적구장, 족구·배구장, 체력단련장, 관리실	
명촌다목적구장	명촌동 진장명촌지구 116블록	다목적구장(인조 1식)	
중산다목적구장	중산동 798-4번지 일원	다목적구장(인조 1식)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동 1741-1	다목적구장(인조 1식)	
효문다목적구장	연암동 266-2	다목적구장(인조 1식)	

[별표 3]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3. 체육시설 사용료

1) 수영

(단위 : 원)

구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강습회원)	일일입장 사용료	
수영	성 인	40,000(50,000/주4회)	2,000
	청소년·군인	35,000(45,000/주4회)	1,500
	어린이·노인	30,000(40,000/주4회)	1,500
아쿠아 로빅	성 인	(50,000/주4회)	
	청소년·군인	(45,000/주4회)	-
	어린이·노인	(40,000/주4회)	-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수영장 이용 20명 이상 단체 입장 시 : 일일입장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9. 조례 제2조제11호에 따른 가위여성 월 사용료 100분의 1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11. 장기·인체조직기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기기증등록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2.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수강료 100분의 5감면(일일입장료 제외) 13.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2) 헬스

(단위 : 원)

구 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
노인, 성인, 청소년	40,000
기 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8.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9. 장기·인체조직동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동기증등록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수강료 100분의 5 감면 11.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3) 탁구

(단위 : 원)

구 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 (강습회원)	시 간 제			
		30분		1시간	
		단식	복식	단식	복식
성인	40,000(55,000/주4회)				
청소년·군인	35,000(50,000/주4회)	2,000	3,000	3,000	4,000
어린이·노인	30,000(45,000/주4회)				
기 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8.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9. 장기·인체조직동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동기증등록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사용료 100분의 5 감면(시간제 사용료 제외) 11.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4) 스쿼시

(단위 : 원)

구 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강습회원)	일일입장 사용료
성인·청소년·군인·어린이·노인 구분없음	50,000 (70,000/주4회)	4,000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일일입장 사용료(4,000원) : 1일 1회 사용, 1시간 이내 3.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9.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10. 장기·인체조직능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능기증등록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1. 그라카드 이용자에게 월 사용료 100분의 5 감면(일일입장료 제외) 12.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5) 배드민턴

(단위 : 원)

구 분	월 강습회원 사용료	일일입장 사용료(1회 1시간 기준)
성인	25,000/주3회	2,000
청소년, 군인, 어린이, 노인	20,000/주3회	1,500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8. 장기·인체조직능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능기증등록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9. 그라카드 이용자에게 월 사용료 100분의 5감면 (일일입장료 제외) 10.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6) 생활체육

(단위 : 원)

구 분	주2회(1회 1시간 기준)	주3회(1회 1시간 기준)
성인	20,000	25,000
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	15,000	20,000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인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8.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사원봉사사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9. 장기·인체조적능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적능기증등록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수강료 100분의 5 감면 11.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7) 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단위 : 원)

시 설 명	기준	사 용 료		비 고
		평일	토·일·공휴일	
마사·축구장	1시간	5,000	7,500	• 옥상트랙 사용은 이용권 교부 •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무료
족구·배구장	"	2,000	3,000	
육상트랙	전용사용	"	10,000	
	연습사용	"	1인당 200	
전기사용	"	1,000		

8) 운동장(인조잔디축구장)

(단위 : 원)

구 분	운동장 이용 시(시간당)	
	평일(야간)	토·일·공휴일(야간)
사용료	25,000(30,000)	50,000(60,000)
기 타	1. 운동장 이용 시 적용 : 복귀 거주주민(주민등록상)회원 비율에 따라 감면 적용 ○ 91~100%(80%감면), 81~90%(70%감면), 71~80%(60%감면), 51~70%(50%감면), 51~60%(40%감면), 41~50%(30%감면), 31~40%(20%감면), 30% 이하(감면 없음) 2.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100분의 5감면 3. 인원수에 따라 할증 적용 ○ 100~299명(60%할증), 300~499명(70%할증), 500~999명(80%할증), 1,000~1,999명 (90%할증), 2,000명 이상(100%할증) ※ “기주주민”이란 주민등록상 체육시설사용허가 신청당일 현재 주민등록에 등재된 사람을 말한다. 4.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9) 다목적미니구장 등

(단위: 원)

구분	다목적미니구장 이용 시(시간당)	
	평일(야간)	토·일·공휴일(야간)
사용료	10,000(15,000)	15,000(20,000)
기타	1. 예약은 신청 순으로 한다. 2. 야간은 조명시설 이용 시도 하며, 청소년(초·중·고)은 50% 할인한다. 3.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100분의 5감면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신규 체육시설물 이관에 따른 명칭, 소재지, 주요시설 추가
- 체육시설(다목적미니구장) 사용료가 울산시 및 관내 타 구·군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아 타 구·군 다목적미니구장 이용자에 대한 민원 해소와 구·군간 형평성에 맞게 조정
- 현 오토벨리복지센터·국민체육센터에서 헬스·수영 동시 신청자에 대한 2강좌 할인 혜택을 전 강좌로 확대하여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신규 체육시설물 이관에 따른 명칭, 소재지, 주요시설 추가(제3조)
- 나. 추가 관리대상 주요시설에 대한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 및 휴무일 지정(제9조)
- 다. 오토벨리복지센터·국민체육센터에서 2강좌 신청 시 강습 사용료는 2강좌 중 사용료가 낮은 강좌의 사용료에 100분의 50 할인 적용(제10조)
- 라. 체육시설 중 다목적미니구장(풋살구장)에 대한 사용료를 울산시 및 타 구·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소 수준(10,000원/시간)으로 인상(제10조)
- 마. 녹색생활 확산을 위하여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사용료 감면(제12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2012년 11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687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4. 구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은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제5조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위촉 당시의 직을 사임하였을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7명 이내로 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해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촉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제정 목적(제1조)
- 나.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제2조~제3조)
- 다.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 등의 직무(제4조~제6조)
- 라. 회의,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간사 등(제7조~제9조)
- 마. 관계기관 등의 협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의 제척 등(제10조~제1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윤종오



2012년 11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688호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서비스”이란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주거지원”이란 중증장애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입주지원, 주택(공동주택을 포함한다)의 구매자금·임차자금 또는 개수·보수 비용 지원 등을 말한다.
5. “중증장애인 사례관리”란 중증장애인 중 시급하거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위해 면밀한 사정(査定), 정기적 상담, 지역 자원 연계, 사후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 상담, 정보제공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제4조(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과 그 보호자,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종류 및 지원)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보조서비스
2. 중증장애인 사례관리
3. 장애동료 간 상담을 포함한 상담지원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기능훈련 지원
5.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 공동생활가정 지원
6. 장애인보조기구의 보급 및 수리
7. 중증장애인을 위한 취업교육 및 구직지원

- 8. 주거지원
- 9. 중증장애가정의 출산, 양육지원서비스
- 10. 그 밖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제6조(자립생활 지원 신청 등) ① 중증장애인과 그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해당 동 주민센터 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은 중증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추가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체적인 지원대상자와 추가 서비스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8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제5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
- 2. 중증장애인의 권익옹호활동
- 3. 정보제공과 지역사회 자원연계
- 4. 그 밖에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센터의 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위탁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센터 운영의 자문과 심의를 위해 센터에 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장과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장애인 복지 관련 전문가(전공 교수, 시민사회단체, 재활 전문가 등)·장애인당사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조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 경고, 센터지정 취소 등 행정상의 조치 및 지원액 환수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예산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본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후원금 등 외부지원금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중증장애인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중증장애인이 지역 사회 안에서 자기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 목적, 정의(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제3조)
- 다.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사업의 종류 및 지원, 자립생활지원신청 등, 추가지원(제4조~제7조)
- 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위탁운영(제8조~제9조)
- 마. 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제10조)
- 바. 지도 감독, 조치(제11조~제12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윤종오



2012년 11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689호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퇴직자지원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주민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교류, 교육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일자리 정보의 통합 관리와 정보제공
2.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및 복지시책과의 연계지원
3. 채용박람회, 취업설명회, 구인·구직상담 등 일자리와 관련한 행사 및 홍보 활동 지원

- 4. 여성·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퇴직자·실직자·미취업자 등 수혜 대상별 취업지원
- 5.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관련 사업

제4조(운영방법)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탁 시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 지원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센터를 법인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라 운영협의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일자리난제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제5조(조직 구성 등) ① 센터장은 취업관련분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구청장이 선임하고, 위탁의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하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센터장 1명과 운영실장(전문상담원) 1명, 상담원 1명 등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상담원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센터지원) 취업알선 상담창구, 이용자 편의시설 등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재무상태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시설폐쇄 등으로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동주민센터 및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일자리정책의 통합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권리의 양도는 물론 다른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10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제9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① 구청장은 센터의 책임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 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 유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일자리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심의·결정
2. 지역주민 취업알선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고용증대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일자리업무 담당국장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1명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직업 관련단체·사업주·노동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지도 감독)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회계장부, 복무사항 등 운영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지도·감독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주민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교류, 교육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 한편, 일자리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민간전문기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복구 퇴직자지원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제2조, 제3조)
- 나. 센터의 운영 및 조직(제4조, 제5조)
 - 위탁기간 : 2년
 - 운영협의회 설치
 - 센터 조직 구성 : 센터장 1명, 운영실장 1명, 상담원 1명
- 다. 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11조, 제12조)